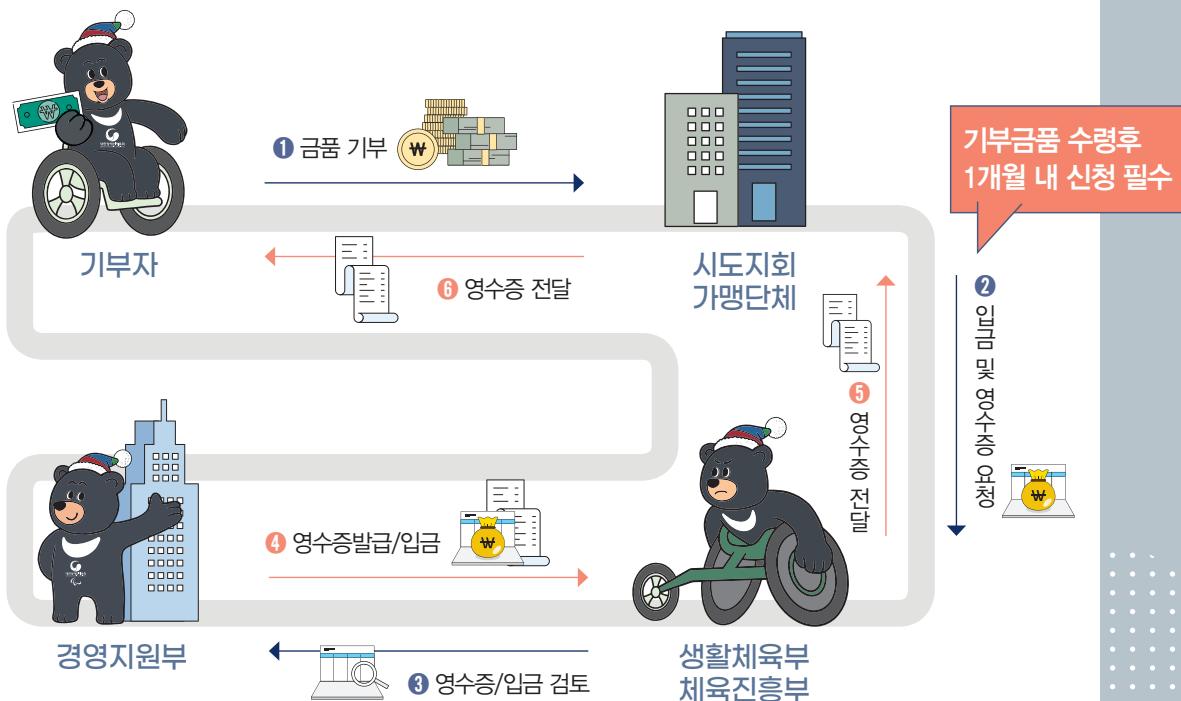


# 한눈에 보는

## 장애인체육 기부금영수증



### 발급절차



### 발급일자

- ▶ **금전** : 대한장애인체육회 기부금 통장사본에 입금된 날짜 기준 발급
- ▶ **현물** : 기부금품신청서 내 기재된 날짜 기준 발급



### 소요기간

영업일 기준 14일(대한장애인체육회 문서 접수 기준)

\* 증빙자료 미비 시 소요기간 늘어날 수 있음





## 지정기탁금 요청시 필요서류

시도지회, 가맹단체가 취합하고,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보내줍니다.



### 금전

- ① 가맹단체, 시·도 장애인체육회 공문
- ② 신분증(개인) / 사업자등록증(사업체)
- ③ 기부금품 신청서
- ④ 입금확인증  
– 기부자 ▶ (시·도지회 or 가맹단체) ▶ 대장체
- ⑤ 가맹단체, 시·도  
장애인체육회 통장사본



### 현물

- ① 가맹단체, 시·도 장애인체육회 공문  
\* 현물 수령 후 1개월 안에 제출
- ② 신분증(개인) / 사업자등록증(사업체)
- ③ 기부금품 신청서
- ④ 만들어서 기부할 때  
☞ VAT 제외한 장부기액확인서 or 원가계산서  
구매해서 기부할 때  
☞ 카드영수증, 전자계산서
- ⑤ 인수증    ⑥ 증빙사진    ⑦ 배부대장 or 배부계획

\* 사업자로 발급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만 필요하며, 사업자의 개인신분증은 불필요



## 발급요청시 협조사항

- ▶ 시도가맹단체의 기부금품의 경우 발급요청문서는 중앙가맹단체로 요청
- ▶ 기부자 → 시도지회, 가맹단체 → 대한장애인체육회 순으로 지정기탁금 계좌로 이체  
(기부자의 대한장애인체육회 통장 직접 입금 금지 : 출처 미확인으로 영수증 발급 불가)
- ▶ 현물의 경우 기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 문서 시행(현물 기부 시 대한장애인체육회 담당자와  
사전 협의 부탁[시도지회 : 02-3434-4523, 가맹단체 02-3434-4521])
- ▶ 해당 년도 내 대한장애인체육회 통장 송금 및 발급 신청 필수
- ▶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6조(기부금품 출연 강요의 금지 등)에 의해 기부금품 출연 강조 금지



## 기부에 따른 세제 혜택(~'22년)

대한장애인체육회는 법정기부금단체로 개인은 소득금액 100%를 한도로  
15%(1천만원 초과분은 30%) 세액공제,  
법인은 소득금액의 50%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  
(이 세제 혜택은 2022년 한정으로, 2023년부터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통합됨에 따라 세제혜택 세부사항 변경가능)

